



“꼭 다시 오겠습니다. KOREA”

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일하며 지내는 동안
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.
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의 가족들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.
이제 기한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만
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.

법을 지키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
한국에서의 꿈을 이루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기에
아쉬움보다 다음을 기약하는 설렘이 더 큽니다.

고용허가제	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, 취업기간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최대 1년 10개월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.

불법체류외국인 신고 대표전화 (**1588-7191**) 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
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, 입국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

법무부 MINISTRY OF JUSTICE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

Dynamic Korea, Global Immigration

법무부 MINISTRY OF JUSTICE

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

비 올 때마다 울지 마세요



언제까지 마음 졸이며 **꼭꼭** 숨어 있어야 할까요?
엄마 말을 듣지 않은 청개구리처럼 후회하면 늦습니다.

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십시오.

⭘ 고용허가제

-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, 취업기간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최대 1년 10개월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.
-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5 ~ 50인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.

⭘ 방문취업제

-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(중국동포 등)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고용부(고용지원센터)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으면 고용허가제 정원만큼 추가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- 재외동포는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, 고용주로부터 재고용 요청이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 최대 1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●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완화해 드립니다.
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.

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.

불법체류외국인 신고 | 대표전화 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**1588-7191**

법무부 출입국 ·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| 국번 없이 **1345**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| 국번 없이 **1350**